

산업안전보건 교육법 전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

I 추진목적

- 몽골 노동사회보장부의 요청으로 안전보건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기법 전수, 교육과정 개발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관한 자문 실시를 통해 대상국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
- ※ 몽골은 공단에게 '03년부터 '18년까지는 몽골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하위규정 제·개정 지원을 요청하였고 올해에는 안전보건 교육제도 및 강의 기법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였음.

☞ 주요 요청내용

- 안전보건 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적용
- 산업안전보건 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기법 전수
- 교육과정 개발 및 교안 작성 등

※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기관현황 : 【덧붙임1】

II 출장개요

- 출장자
 - 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
 - 조민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법정교육학부장
 - 변종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정책교육학부 교수
 - 김정섭 전문역량강화센터 차장
- 출장기간
 - 신인재 교육원장 및 김정섭 차장 : '19. 12.19.(목) ~ 12.21.(토) [2박3일]
 - 조민환 법정교육학부장 및 변종한 교수 : '19. 12.15.(일) ~ 12.21.(토) [6박7일]
- 출장지 : 몽골(울란바토르)

III 주요 수행사항

□ 강사 양성 기법 등 전수

- 몽골 사회보장부에서 주최하는 ToT워크숍*(19.12.16~12.21)시 공무원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기법 등 전수

* Training of OSH Trainers : OSH 강사양성 교육

- 산업심리, 이미지 메이킹, 강의용 시나리오 및 교안 작성 방법 등 전수를 통해 몽골의 안전보건교육이 현장 작동성을 발휘하도록 지원

□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재예방정책 등 공유

- 몽골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자문
- 몽골 사회보장부 주관 워크숍이 내실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강의기법 및 교육제도에 대한 피드백 실시

※ 워크숍 종료일인 12. 20.(금)에 몽골의 교육제도와 강의기법 등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자문 실시

□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몽골의 집중 자문 필요분야 파악

- 몽골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산재예방 활동의 비교·분석을 통해 향후 추가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
- 워크숍 등을 통해 몽골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스템 정착 지원

IV 출장일정 및 수행내용

(기준시간 : 현지시간)

일 자	내 용	장 소
12.15.(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국[조민환, 변종한] - 14:20 인천공항 출발 - 17:00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 도착 	공항
12.16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동사회보장부(MLSP) 워크숍 참석 - 산업안전보건정책, 법, 규칙 - 몽골의 산업재해현황 및 재해다발 사례 분석 	MLSP
12.17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동사회보장부(MLSP) 워크숍 참석 - 성인학습심리 강의 -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방법론 강의 I 	MLSP
12.18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동사회보장부(MLSP) 워크숍 참석 - 프리젠테이션 스킬 강의 - 이미지 메이킹 강의 	MLSP
12.19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동사회보장부(MLSP) 워크숍 참석 -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방법론 강의 II - 교수법 시나리오 및 전략 강의 (PPT 작성방법 포함) - 교수법 시나리오 및 전략 피드백 ▶ 출국[원장, 김정섭] - 14:20 인천공항 출발 - 17:00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 도착 	MLSP MLSP
12.20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동사회보장부(MLSP) 워크숍 참석 - 워크숍 참석자 강의 시연 및 피드백 - 워크숍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토의 	MLSP
12.21(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귀국 - 17:10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 출발 - 21:20 인천공항 도착 	공항

※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, 대체 또는 취소될 수 있음

V 행정사항

- 동 출장은 2019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「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동반성장 지원」 사업으로 추진
- 환율 등락폭을 감안하여 출장여비 지급요청일 기준의 환율 적용
- 국외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을 받은 경우, 「공직자 선물 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 [덧붙임2]
- 공항 이동을 위한 국내 운임은 국내여비 처리
-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
- 출장결과는 공단 ERP 및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

(MLSP :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)

□ **설립년도 : 1959년(설립 60주년)**

- 몽골은 선거결과에 의한 정권교체에 따라 정부부처가 폐지 또는 신설되는 특성이 있으며, 관련 영향으로 몽골의 노동부는 과거 2회 폐지됨
 - 1차 폐지 : 1987년, 2차 폐지 : 1997년
 - 국장급 이상 모든 공무원 경질

□ **조직(인원) : 8국 12과(120명)**

- 노동관련 법·정책 수립을 주업무로 하고, 근로·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별도의 기관(국가전문감독기관, GASI)에서 수행
 - ※ 차관 : Ms. Mungunchimeg Sanjaa

□ **주요기능**

- 노동보호, 실업대책, 빈곤탈피, 노동조건, 임금, 사회보험, 사회복지, 노동관계의 조정 등

□ **주요업무**

- 노동조건·노동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법률 이행
- 노동조건에 관한 조사와 결정
- 산업안전보건 정책, 여성·아동 노동자 보호 및 ILO 협약의 집행과 감독
- 사회복지 관련 각종 기금 및 자금의 확립과 사용감독
-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자료 수집·배포

□ 교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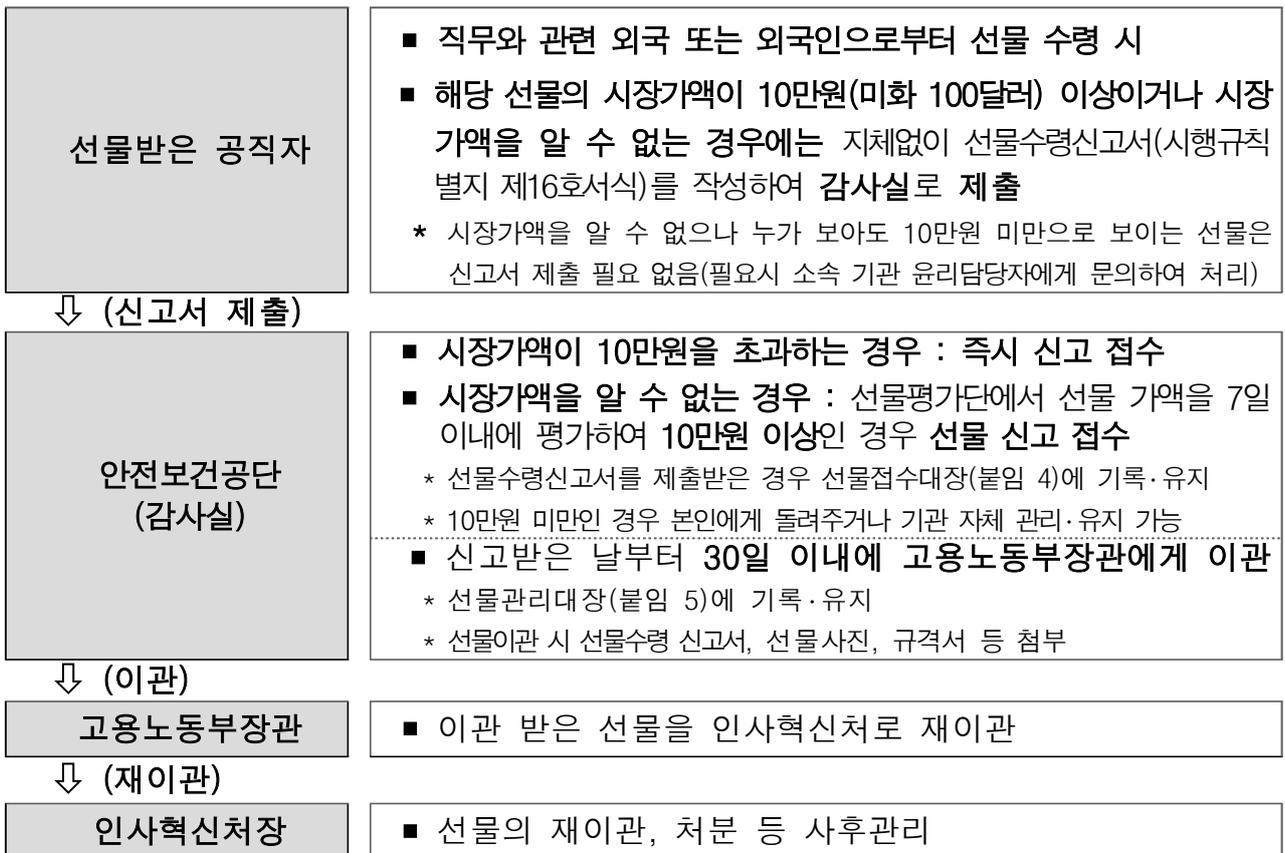
연번	연도	분야	내용	출장자
1	2014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사전실무회의	국제협력팀 직원 등
2		기술자문	몽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책자문사업	국제협력팀 직원 등 5명
3		기술자문	정책자문사업 이행협정 체결	기획이사
4		기술자문	산안법 개정을 위한 몽골 정책자문사업	국제협력팀 직원 등 2명
5	2015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사전실무회의 및 세미나 참석	국제협력팀 직원 등 2명
6		기술자문	몽골 건설안전분야 워크숍 주제발표 및 건설안전 정책 등 기술자문	경기남부지사 김국성 과장
7		국내연수	몽골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	몽골 노동부 공무원 8명 등 15명
8	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세미나 개최	경영기획실장 등 7명
9	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전문가 파견 및 자문	교육원장 등 4명
10		국내방문	몽골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 정책권고 설명회 개최	몽골 노동부 7명
11	2016	초청연수	산업안전보건분야 초청연수	몽골 노동부 15명
12	2018	기술자문	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체계, 자격인정에 관한 발표 실시	교육원장 등 2명
13	2019	기술자문	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창립 60주년 기념 포럼 기초연설 및 협정 연장 체결	경영이사 등 3명
14		기술자문	몽골 산업안전보건법 및 교육분야 자문	이동원 소장 등 3명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